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박상혁 · 문금주
김문수 · 문진석 · 이주희
백승아 · 이기현 · 김현정
허영 · 김준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순수한 학술·문화·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미국,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,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,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).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)을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
2. 순수한 학술·문화·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대외발표 및 활동)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,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순수한 학술·문화·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6조(대외발표 및 활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신설>	1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)을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
<신설>	2. 순수한 학술·문화·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